# 사단법인 기부천사 정관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"기부천사" (이하 "법인"라 한다)라 칭한다

제2조(목적) 본 법인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·사회적·정서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3조(소재지)

-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강변로87번길 5 야스텍타워 6층 602호에 둔다
-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(지회)를 전국 주요 도시에 둘 수 있다.
- **제4조(사업) 법인은**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1. 빈곤가정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
  - 2. 장애인 가족을 둔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
  - 3. 미혼모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지원
  - 4. 취약계층 청소년 발굴 및 연구사업
  - 5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이 있어서 발생하는 수입은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수혜자에게 제공한다.

### 2장 회 원

- 제6조(회원의 자격) ① 법인의 회원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- ② 회원의 유형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  - ③ 회원의 유형에 따른 자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- 제7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법인의 모든 권익을 고루 가지며,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  - 1. 총회 출석 및 의결권
  - 2.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
  - 3.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권
  - 4.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제8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의무
  - 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
  - 3.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의무
  - 4. 법인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
- 제9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인이 정한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-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.
  - 1.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
  - 2. 제6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  - 3. 3회 이상 연속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- 4.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경우

#### 제10조(회원의 회비)

① 회비는 가입비, 연회비로 구분하고 납부방법과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

도로 정한다.

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### 3장 임 원

제11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- 1. 회장 1인
- 2. 부회장 1인
- 3. 이사(회장, 부회장 포함) 5인 이상
- 4. 감사 2인 이하

제12조(임원의 선출)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- ② 부회장 및 이사와 감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단,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,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1.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-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제15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-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다.
- 제16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-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-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-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  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- 5.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17조(직무대행)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 한다

-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제18조(상임고문) ①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
  - ②상임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③ 상임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
### 4장 총 회

제19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- 제20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  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-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 야 하다.
  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  - 2.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-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  -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
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

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#### 제22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 사업계획의 승인
- 6. 기타 중요사항
- 제23조(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 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.
  -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1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- 2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-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의결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## 5장 이사회
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
- 제26조(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-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연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  -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  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  - 2.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- ④ 이사회 소집 시, 회장은 회의 안건,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7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1.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
-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8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9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28조(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29조 (서면결의)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 6장 재산과 회계

- **제30조(재산의 구분)**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  -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"별지"와 같다.
  -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제31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 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- 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2조(재원)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회비
  - 2. 각종 기부금
  - 3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  - 4. 기타
- 제33조(회계연도)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- 제34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- ②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35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36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### 7장 조직

- 제37조(사무국)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-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  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### 제8장 보 칙

- 제38조(법인해산)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- 제39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0조(업무보고)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

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41조(공고사항 및 방법) ① 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중요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.
  -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- 제42조(규칙제정)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하다.

### 2020년 05월

발기인 대표 김정주 (인)

발기인 정인선 (인)

발기인 손우용 (인)

발기인 이아롬 (인)

발기인 정창욱 (인)